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2-119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 (0.0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백재현)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나. 출연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해야하는 바,
-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우리 구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경비 조달 필요

## 다.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출연금 : 20,21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2021회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68,430,711천 원)에 만분의 1.2 (0.012%)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 세부사항은 2023회계연도 사업예산(안)으로 편성 하여 대한 구의회 심의 및 확정

## 라. 추진일정

- 2022. 11월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수립
- 2022. 11월 : 구의회 의결 요청
- 2022. 11월 : 구의회 의결(제 259회 정례회)
- 2022. 11월 ~ 12월 : 예산 심의 및 확정

##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개정 2020. 9. 8.>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 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